

대한산업안전협회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제안 요청서

2026. 10.



대한산업안전협회
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

1

목 적

-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을 (재)평가하여, 협회 여건에 맞는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

2

제안서 제출자격

- 가. 공고일 현재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동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
- 나. 2025년 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DB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
 - ※ 계열사 적립금 제외 및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합한 순위
- 다. 협회의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도 제안서 제출 대상이며, 본사(사업자등록번호 기준) 외 지점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가

3

퇴직연금사업자 선정방법

- 가. 평가방법: 협회 선정기준에 의거 종합적 평가 후 업권별로 사업자 선정
 - 1) 1차 정량평가(45%): 제출한 제안서의 객관적 자료를 업권별 평가하여 업권별 각 2개사 이상, 최대 15개사 선정
 - 2) 2차 정성평가(55%):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발표 (PT) 실시 (사업자별 15분 이내, 일정 별도 통보)
 - 3)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지표 중 서비스 제공역량, 수수료, 제안수익률 순으로 비교하여 순위 부여
- 나. 선정 절차: 1차 및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업권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1) 업권별 각 1개사 이상, 최대 10개사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
 - 2)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을 철회할 경우 차상위 득점자로 선정
 - 3) 다만, 특정 업권의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평가결과 적격 사업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업권에 대한 선정 생략

- 4)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
- 5)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

4

제안서 작성방법

가. 작성양식: A4 규격/세로 (한글, 워드, 파워포인트)

※ [별지 6]의 제안서 작성양식 준수

나. 작성분량: 30매 이내(표지, 목차 제외)

- 1)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,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
- 2) 증빙자료 별도 제출

다. 작성 시 유의사항

- 1) 모든 자료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
 - 애매한 표현(예: ~할 수도 있다, ~예정이다, ~검토 중이다, ~고려 할 수 있다 등)으로 제안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
- 2) 타 사업자 비방 또는 비교자료 금지
 - 기준일자, 산출기간 등에 자의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내용 외 비교자료 기재 삼가
- 3) 숫자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,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
- 4)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확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함(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가 부담)
- 5)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는 기 제출된 제안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정성평가 항목의 제안내용을 변경·추가하거나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은 보완 또는 추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
- 6) 제출된 제안서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·삭제·추가할 수 없으며, 제안서 제출 이후 정성평가 항목에 관한 제안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인정하지 않음

다.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, 증빙자료 미비 또는 기재내용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업자에게 있음

5

제안서 제출 안내

가. 제출기한: 2026년 10월 21일 15:00까지.

-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 불가

나. 제 출 처: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19층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

다. 문 의 처: 총무부 유 진 차장(02-860-7046), 회계부 이진용 차장(02-860-7032)

- 공고 후 제안내용 관련 외 사업자와 별도 면담 불가

라. 제출방법 : 제출기한까지 방문 접수 건에 한함.

마. 제출서류

구 분	부 수	비 고
○ 회사 기본서류		
- 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
-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	1부	
- 법인등기부 등본	1부	
- 위임장(대표이사 외 참석자)	1부	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 1부	
- 회사현황서 및 재무재표	각 1부	
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	1부	
○ 입찰(제안) 참가신청서 (협회 소정양식)	1부	【별지 1】
○ 제안업체등록서 (협회 소정양식)	1부	【별지 2】
○ 청렴계약 이행각서 (협회 소정양식)	1부	【별지 3】
○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(협회 소정양식)	1부	【별지 4】
○ 서약서	1부	【별지 5】
○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제안서	8부	【별지 6】
- 증빙자료 출력물	1부	
- 제안서 및 증빙자료 전자파일 (USB)	1개	

※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,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고 협회에 귀속됨

가. 제안서 효력

- 1) 제안서의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- 2) 필요 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나. **조건변경**: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시 협회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

다. **이의제기**: 세부평가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, 본 제안서의 내용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협회의 해석에 따름

라. **기밀유지**: 제안서 작성,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협회의 자료 및 사업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

마. **교육의무**: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, 홍보 및 제반 교육을 실시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

바. **선정취소**: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
※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

사. **계약해지**: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용실적 및 서비스가 협회 내부평가 기준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

아. **전산시스템**: 선정된 사업자는 협회 퇴직연금 관리자 및 가입자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에 협조하여야 함

자. 최종 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, 기존 가입되어 있는 적립상품 해약/이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추진일정은 별도 통보하며, 해약/이전 관련서류는 사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차. 퇴직연금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 중 간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

평가방법	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량 평가 (45)	재무 안정성 (15)	수익성	- 총자산이익률(ROA) - 자기자본이익률(ROE)	5
		채무건전성	- BIS자기자본비율(은행) - 지급여력비율(보험) - 영업용순자본비율(증권)	5
		대외신용도	국내신용등급	5
	자산운용 실적 (25)	제안 수익률	원리금보장상품 제안 수익률(1년형)	5
		수수료 체계	퇴직연금 수수료 누적 합계액	10
		자산운용 수익률	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	5
		퇴직연금 실적	퇴직연금 누적 적립금(DB/DC)	5
	고객만족도 (5)	소비자보호 실태평가	-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- 퇴직연금사업자 상위등급 평가	5
정성 평가 (55)	제도운용 역량 (20)	조직 및 인력	- 전문인력자격증 보유 현황 및 업무숙련도 -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-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	10
		시스템 인프라	- 퇴직연금 시스템 특징 -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	10
	서비스 제공 역량 (35)	교육 역량	- 교육 조직 및 교육지원 역량 - 협회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	10
		부가서비스	-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-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 - 협회 특화 서비스	25
	합계			100

가. 정량평가 기준

1) 수익성

- 총자산(ROA)과 자기자본(ROE) 이익률을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120% 이상	100% 이상	8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
배점	5	4	3	2	1

2) 재무건전성

-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기반하여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120% 이상	100% 이상	8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
배점	5	4	3	2	1

3) 대외신용도

- 최근 1년 이내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한국신용정보의 신용등급에서 획득한 등급 중 가장 유리한 신용등급 절대평가

구분	AAA	AA+	AA	AA-	A+이하
배점	5	4	3	2	1

나. 자산운용 실적

1) 제안 수익률

- 원리금보장형 상품(1년, A등급 이상 상품) 기준 제안 수익률을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120% 이상	100% 이상	8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
배점	5	4	3	2	1

2) 수수료 체계

-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를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80% 미만	90% 미만	100% 미만	110% 미만	110% 이상
배점	10	8	6	4	2

3) 자산운용 수익률

-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3년 평균 수익률을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120% 이상	100% 이상	8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
배점	5	4	3	2	1

4) 퇴직연금 실적

-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합계를 제출 사업자의 업권별 상대평가

비율	120% 이상	100% 이상	8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
배점	5	4	3	2	1

다. 소비자보호 실태평가

1)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

-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3년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의 “미흡” 이하 개수의
합계 절대평가

비율	0개	1개	2개 이상
배점	3	2	1

2)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

- 고용노동부 공시기준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전체종합평가 및 평가
항목별 상위 10% 사업자의 개수 합계 절대평가

비율	3개 이상	2개 이하
배점	2	1

나. 정성평가 기준

1) 제도운용 역량

가) 조직 및 인력 (자유양식)

평가부문	평가내용
조직 및 인력	▪ 퇴직연금 전담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, 지원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있는가? ▪ 공공기관 전담인력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가? ▪ 당사 임·직원을 위한 전담인력 또는 지점이 배정되어 있으며, 담당자는 일반 업무가 아닌 퇴직연금 업무만을 전담하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? ▪ 적절한 전문인력(노무사, CPA, CFA, CFP, 계리사)을 보유하고 있는가? ▪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전담 콜센터 유무 및 인원·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? ▪ 상기 항목 외 추가적인 강점 및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?

나) 시스템 인프라 (자유양식)

평가부문	평가내용
시스템 인프라	▪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? (독자 시스템 보유 여부, 개발비용 등) ▪ 퇴직연금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가? ▪ 웹/모바일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며 편리한가? ▪ 시스템 보안체계(인력, 규정 등)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? ▪ 회사의 퇴직연금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·자료제공 기능이 우수한가? ▪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, 중도인출 시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처리 가능하며 편리한가? ▪ 상기 항목 외 추가적인 강점 및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?

2) 서비스 제공 역량

가) 교육 역량 (자유양식)

평가부문	평가내용
교육 역량	▪ 퇴직연금 교육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가? ▪ 퇴직연금교육 지원인력 및 전담조직 구성이 우수한가? ▪ 퇴직연금 전담 교육 강사의 질적·양적 수준은 어떠한가? ▪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채널 및 콘텐츠가 다양하고 접근이 편리한가? ▪ 교육의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교육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가? ▪ 퇴직연금 및 금융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가? ▪ 실무자 업무지원 서비스는 잘 구성되어 있는가? ▪ 상기 항목 외 추가적인 강점 및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?

나) 부가서비스 (자유양식)

평가부문	평가내용
부가 서비스	▪ 부가서비스는 질적, 양적 수준이 높고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? ▪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체 임직원을 위한 것인가? ▪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인가? ▪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업무지원 프로세스는 어떠한가? ▪ 협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? ▪ 상기 항목 외 추가적인 강점 및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?